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병진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1870
----------	-------

발의연월일 : 2025. 7. 31.

발 의 자 : 이병진·김 윤·허성무
강득구·송재봉·김동아
윤준병·김남근·김문수
한정애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기본직불금(소농직접지불금, 면적직접지불금) 지급 대상에서 농업 외 종합소득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연 3,700만 원 이상인 자를 제외하고 있음.

그런데 통계청에 따르면 2023년 전국 연평균 가구소득이 7,185만 원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농외소득 기준은 2007년도 수준인 3,700만 원으로 16년간 동결되어 있어 농가의 경제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이러한 기준은 농가의 생활비 상승, 물가 변동 등을 고려하지 않아 농업인의 경제적 안정성을 충분히 지원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기본직접지불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농업 외 소득 기준을 ‘전전년도 전국 연평균 가구 소득’으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소득 기준 적용을 현실화하여 농업인의 소득 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

3항 제1호).

법률 제 호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제1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전전년도 전국 가구 연평균 소득(「통계법」 제18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매년 고시하는 전국 가구의 연평균 소득을 말한다)”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 자) ① · ② (생 략)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기본직접지불금의 지급대 상자가 될 수 없다. 다만, 제4 호 또는 제5호의 경우에는 해 당하는 토지분에 한하여 지급 대상자가 될 수 없다.	제9조(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 자)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 -----. ----- -----.
1.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u>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u> 이 상인 자	1. ----- <u>전전년도 전국 가구 연평균</u> <u>소득(「통계법」 제18조에 따</u> <u>라 통계청장이 매년 고시하는</u> <u>전국 가구의 연평균 소득을</u> <u>말한다)</u> -----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